

【 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】

1. 이용정원은 주간보호센터 32인으로 한다.
2. 모집방법은 장기요양등급 1~6등급 및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【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】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 이라고 한다)에서 이용자에게 발부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기간이 변경(갱신)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3.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4. 기관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5%로 정한다. 다만, 의료수급 조건에 따라 경감은 9%, 6%, 기초생활수급자는 0%를 적용한다.
5. 조식비 3,000원, 중·석식비 3,500원, 간식비 500원으로 한다. (월 20일 기준 150,000원)
6. 1일 수가 및 등급별 월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① 1일 수가 및 본인부담금

주간보호 (20일, 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 기준) 본인부담금 20% 기준				
구분	수가	총액	본인부담금	식대
1등급	64,400	1,288,000	193,200	150,000
2등급	59,660	1,193,200	178,980	
3등급	55,080	1,101,600	165,240	
4등급	53,580	1,071,600	160,740	
5등급	52,050	1,041,000	156,150	
6등급	52,050	624,600	93,690	

② 등급별 월한도액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885,000 원	1,690,000 원	1,417,200 원	1,306,200 원	1,121,100 원	624,600 원

【 주간보호센터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】

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 - ① 이용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 - ② 급여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 의무
 - ③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2. 이용자의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
 -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- ③ 기관내의 청결 의무
 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 -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

3. 보호자의 의무

-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제반비용 부담
-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/급여종류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
-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

【 주간보호센터 계약자의 해지 】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1. 제 13조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- 2. 제 14조 당사자간의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4.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5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6. 기관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7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8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이용중 지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때

【방문요양센터 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】

1. 정원은 방문요양/방문목욕 제한 없음으로 한다.
2. 모집방법은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및 인지등급 그리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【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】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(이하 “공단” 이라고 한다)에서 대상자에게 발부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기간이 변경(갱신)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3.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4. 기관이용 시 본인부담금 15%로 정한다. 다만, 의료수급 조건에 따라 경감이 적용되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0%를 적용한다.
5. 월수가 금액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① 방문요양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
가-1	30분 이상	16,190
가-2	60분 이상	23,480
가-3	90분 이상	31,650
가-4	120분 이상	40,280
가-5	150분 이상	46,970
가-6	180분 이상	52,880
가-7	210분 이상	58,930
가-8	240분 이상	65,000

② 방문목욕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
나-1	60분이상 (차량이용 차량내)	82,160
나-2	60분이상 (차량이용 가정내)	74,070
나-3	60분이상 (가정내)	46,250

③ 등급별 월한도금액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등급
월 한도액(원)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
【방문요양센터 당사자 간의 의무 및 신원인수자의 권리 및 의무】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신원인수인(보호자)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방문요양(방문목욕)의 급여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 의무
- ③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. 서비스이용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
-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계약 범위내에서 급여이용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이용자는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의무

3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대상자는 제13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보호자)을 지정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호자)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
-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【방문요양센터 계약자의 해지】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 11조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2. 제 12조 당사자간의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5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6. 방문요양/방문목욕의 급여제공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(보호자 업무대행, 집안행사 참여 등)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
7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
8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